

지리적표시제의 이해

황은선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 지리적표시제(Geographical Indications)

지리적표시제는 농산물과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또는 기타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할 때 해당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표시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0월에 체결된 한-EU 기본협력협정을 계기로 1999년 7월 1일 농산물품질 관리법에 유럽형의 특별한 ‘지리적표시 보호제도’를 도입하였다. 지리적표시제는 세계무역 기구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협정(WTO/TRIPs)에서 1994년 법제화된 지적재산권 제도이다. 지리적표시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는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수한 지리적 특산물을 국내외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고흥유자’, ‘이천쌀’ 등 우리나라에는 지명만 들어도 금방 연상되는 명품 농산물이 많다. 이들은 오래 전부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지명+품명’ 브랜드이다. 이들의 명성은 특정지역의 자연환경과 품질을 향한 지역주민들이 기울인 노력의 결과다. 현재 농식품에 운영되는 많은 인증제도 가운데 대부분은 특정 제품의 품질에 대한 후천적, 인적 노력을 평가해 인정해 주고 있다. 이에 비해 지리적표시제는 인적요인과 함께 농식품이 생산된 지역의 자연적, 환경적 요인 즉 선천적 요인을 평가하고 인정해주는 유일한 제도이다. 다시 말해 지리적 특성(지형, 토양, 일조시간, 강수량 등)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인적 노력만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지리적표시제이다.

지리적표시제가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 년이 지났고 2008년 10월까지 ‘이천쌀’, ‘고흥유자’, ‘진도홍주’ 등 65개의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이 지리적표시품으로 등록되어 지리적 명칭을 보호받고 있다.

■ 지리적표시제란?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표시제를 가장 성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다. 20세기 초 신대륙의 값싼 포도로부터 위협을 받게 되자 프랑스는 지리적표시제로 자국 포도산업을 차별화함으로 극복하였다. 우리가 잘 아는 '보르도 포도주'는 지리적표시로 등록되어 있어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서 생산된 포도주가 아니면 그 명칭을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보르도풍의 포도주', '보르도 스타일의 포도주'와 같은 표시도 할 수 없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에도 나타나는데 보성녹차의 경우 '국내 지리적표시 1호'라는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각종 매스컴에서 지리적표시 등록사례로 보성녹차를 소개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지리적표시품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현재 보성은 지리적표시로 차별화된 녹차산업을 관광산업 등으로 연계하여 보성군의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녹차의 판매가격 상승은 물론이고 제다업체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성=녹차'라는 이미지가 정착되면서 녹차 밭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고창복분자주'도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인하여 복분자 재배면적 증가, 가격상승 및 복분자를 활용한 주스, 챙, 분말차 등의 가공제품 산업도 확대되었다. 괴산고춧가루의 경우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제품의 차별화를 이루었다고 판단하며 학교 급식영양사들이 믿고 찾는 제품이 되었다고 한다. 지리적표시제의 등록은 단순히 농산물의 판매수익 증대를 넘어서 지역의 여러 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 유사제도란?

지리적표시와 유사한 제도로는 원산지표시, 품질인증 등이 있다. 이들과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

■ 원산지표시제란?

두 제도 모두 특정 물품의 생산 또는 가공지역을 나타내는 표시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원산지표시는 단순한 출처표시로 품질, 명성, 지리적 요인과의 관련성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표시이다. 반면 지리적표시는 품질특성과 명성을 요건으로 한다. 또 원산지표시는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을 표시하나 지리적표시는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그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44 지리적표시제의 이해

드러나는 특정지역을 구획하게 된다. 지리적표시 상품은 원산지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표 1. 지리적표시와 원산지표시의 차이점

구분	지리적표시	원산지표시
지역명	필요	필요
품질	지리적 요인에 기인한 품질특성 및 우수성 필요	불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 지역명	상품의 지리적 특성이 나타나는 특정지역의 이름	국명 또는 행정구역명
규제여부	임의표시(등록)	강제표시(의무)
사용자격	지역 내 정당한 생산자	지역인 모두

▶ 지리적표시와 품질인증의 차이점

품질인증은 품질의 우수성을 등록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리적표시와 유사하다. 그러나 품질인증은 상품의 특성이 특정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반면 지리적표시는 품질의 우수성이 반드시 지리적 특성에서 기인해야 한다. 또 품질인증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갱신을 해야 하나 지리적표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항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리적표시는 특정 지역의 생산자단체 공동이 등록을 해야 하지만 품질인증은 개인도 가능하며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표 2. 지리적표시와 품질인증의 차이점

구분	지리적표시	품질인증
등록요건	지역성 필요	불필요
품질	지리적 요인에 기인한 품질의 우수성 필요	품질의 우수성 필요
명성	필요	불필요
표시 지역명	특정 지역명	불필요
사용기간	항구적	일정기간마다 갱신
규제여부	임의표시(등록)	임의표시(승인)

■ 지리적표시제 발전 방향

지리적표시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공히 보호하는 제도이다. 먼저 일정한 품질수준을 가진 제품에만 지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고품질 지명브랜드 생산자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농식품의 생산정보와 진정한 원산지를 식별할 수 있는 정확한 소비정보를 제공해 준다. 또한 해당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에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다. 해당지역은 그 지역 내에서 농산물의 생산, 조제, 가공의 전 과정을 수행함으로써 농업 및 농외소득의 증대

와 더불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이농방지 및 지역자본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는 지역의 전통문화 유산의 보호와 외국농산물의 부정유통 방지 및 국산 농산물을 국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확보에 기여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리적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지리적 표시등록품을 공동브랜드 육성, 지역특화사업 등 각종 정책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품질과 브랜드 가치를 높여 세계시장에 내놓을 명품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작년 지역공동브랜드 육성사업에 지리적표시 등록 단체인 ‘의성마늘’, ‘경산대추’, ‘횡성한우’를 선정하여 판촉행사, 홍보 마케팅비용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농식품 박람회, 판매 전 등에 지리적표시품의 전시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 박람회 참가 대상 및 각종 농업 정책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명성이 높은 지리적 특산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 개방화 시대에 수입 농식품과의 품질 차별화를 통한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지리적표시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